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50
----------	-----

제출연월일 : 2005. 4. 11
제 출 자 : 사하구청장

1. 제안사유

- 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른 일부사항 조정과
- 나. 2004.7.1부터 시행중인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골자

- 가. 계속적으로 법령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자를 근절하고 위반회수와 상관없이 항상 1차 위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 삭제(안 제8조제1항)
- 나. 같은 날에 신고 건수가 많은 경우 사실확인 요청서 발송기간을 연장(안 제12조제1항)
- 다. 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을 현금 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물로도 지급 가능하도록 함(안 제13조제1항)
- 라.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로 개정(안 제14조제1항제2호, 별표1)
- 마. 신고포상금 제도 도입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1인당 신고 포상금 지급 한도액을 전국 기준 월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하향 조정(안 제14조제1항제5호)
- 바. 규제대상 사업장의 규모와 위반회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금액 하향 조정(별표1)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40조, 제41조, 제42조, 동법시행령 제8조, 제9조, 제50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 제28조,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규정」

(환경부예규 제257호, 2005.2.11)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예고 : 2005.3.11 ~ 3.31 ▷ 의견제출없음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 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12조제1항중 “3일”을 “7일”로 한다.

제13조제1항중 “원칙으로 한다”를 “원칙으로 하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 현
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중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
점·쇼핑센터, 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를 “「유
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로 하고, 동항제5호중 “월 100만원”을 “전국기준 월 50만원”으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제명 “부산광역시사하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 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
금지급조례”를 “부산광역시 사하구 1회용품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지급 조례”로 한다.

제1조제1항중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단위 : 만원)

부 과 대 상	과 태 료			포 상 금 액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법 제10조)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50	100	200	10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300인 이상 1,0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30	50	100	5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10	30	50	3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급식소	5	10	30	2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 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가. 객실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50	100	200	10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30	50	100	5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10	30	50	3

과 부 과 대 상	태 료			포 상 금 액
	1차 위 반	2차 위 반	3차 위 반 (이후)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3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30	50	100	5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	30	50	3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5	10	30	2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이상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0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경우	5	10	30	2

과 태 료				포상 금액
부 과 대 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이상인 사업자	50	100	200	10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30	50	100	5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이상 165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10	30	50	3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미만인 사업자	5	10	30	2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50	100	200	10

[별지 제11호서식]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에 대한 부과근거 법령
▶ 채납자에 대한 조치
 채납기간이 경과한 채납자에
 관하여, 과세표준이 과다하여
 과세된 과세표준을 과소
 과세한 경우, 과세표준을
 과소과세한 금액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과세표준, 과세기간, 과세처분
 시효기간, 과세처분 기한, 과세
 처분의 효력, 과세처분의
 취소 및 구제신청에 관하여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의신청

과세표준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과세표준에 대하여 과세표준
 환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과
 세처분 기한, 과세처분 기한
 에 따라 구제신청의 기한은
 60일(과세표준) 또는 90일
 입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 시, 과세표준
 환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기한 경과 시 수납의뢰서

발급 시, 과세표준 환부금액
 환부금액에 대한 이의신청
 및 구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세외]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 (감정대상자용)

납부
 과태료

납기후금액
 까지

납기후금액
 까지

합계금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구세외]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 (감정대상자용)

납부
 과태료

(납부자보관용)

납기후금액
 까지

납기후금액	까지	부과내역
합계금액		

부과내역

위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 기한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구세외] 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 (감정대상자용)

납부
 과태료

세외수입

납기후금액
 까지

납기후금액	까지	부과내역
합계금액		

부과내역
 수납부서

위 금액을 납부하십시오.
 납부 기한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세외수입 안내

부과근거법령

세외수입의 부과에 관한 법령

해당자에 대한 조치

해당자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예의신청

예의신청에 관한 사항

납부기한 경과시

납부기한 경과시 조치 사항

수납의뢰서

[구세외]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

과목	과세	까지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권한

[구세외]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과 목 고 지 번 호

(납부자보편용)

과목	과세	까지	부 과 내 역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본 금액을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권한

수납인

[구세외]일회용품사용규제위반행위과태료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과 목 고 지 번 호

(부정보편용)

세외수입

과목	과세	까지	부 과 내 역
납기후금액			
합계금액			

본 금액을 납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년 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권한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p> <p><u>①주민신고에 의하여 적발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위반회수와 관계없이 항상 1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p> <p>②~③ (생 략)</p>	<p>제8조(신고에 의해 적발된 사업장의 과태료 부과)</p> <p><u><삭 제></u></p> <p>②~③ (현행과 같음)</p>
<p>제12조(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위반사업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위반행위 사실확인 요청서를 발송하여야 한다.</p> <p>②~⑧ (생 략)</p>	<p>제12조 (구청장의 신고서 처리 등) ①----- ----- -----7일----- ----- -----</p> <p>②~⑧ (현행과 같음)</p>
<p>제1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p> <p>①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신고자가 미리 신고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②~③ (생 략)</p>	<p>제13조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시기 등)</p> <p>①----- ----- -----<u>원칙</u> <u>으로 하되, 현금이외에 지역상품권 등</u> <u>현물로도 지급할 수 있다.</u></p> <p>②~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p> <p>① (생 략)</p> <p>1. (생 략)</p> <p>2. <u>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 도매 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소에서 A4규격(210mm×297mm) 또는 1,000cm² 이하의 종이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u></p> <p>3.~4. (생 략)</p> <p>5. 신고자의 포상금 합계가 <u>월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u></p> <p>6.~9. (생 략)</p> <p>② (생 략)</p>	<p>제14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p> <p>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u>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와 「통계법」에 의하여</u> ----- ----- ----- ----- ----- -----</p> <p>3.~4. (현행과 같음)</p> <p>5. ----- <u>전국 기준 월50만원</u> -----</p> <p>6.~9.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별표1]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단위: 만원)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1회용품을 사용 또는 무상제공하거나 재활용 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 한 때(법 제10조)					-----				
1.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 작·배포한 때					-----				
가. 객실과 객석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 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0 인 이상의 집단급식소	<u>100</u>	<u>200</u>	<u>300</u>	<u>20</u>	-----	<u>50</u>	<u>100</u>	<u>200</u>	<u>10</u>
나. 객실과 객석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 는 상시 1회 300인이상, 1,000인 미만 의 집단급식소	<u>50</u>	<u>100</u>	<u>200</u>	<u>10</u>	-----	<u>30</u>	<u>50</u>	<u>100</u>	<u>5</u>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u>30</u>	<u>50</u>	<u>100</u>	<u>7</u>	----- ----- -----	<u>10</u>	<u>30</u>	<u>50</u>	<u>3</u>
라. 객실과 객석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식품접객업소 또는 상시 1회 100인 미만의 집단 급식소	<u>10</u>	<u>30</u>	<u>50</u>	<u>3</u>	----- ----- -----	<u>5</u>	<u>10</u>	<u>30</u>	<u>2</u>
2. 목욕장, 숙박업소(객실 7실이상)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 ----- -----				
가. 객실 50실 이상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상의 목욕장인 경우	<u>100</u>	<u>200</u>	<u>300</u>	<u>20</u>	----- ----- -----	<u>50</u>	<u>100</u>	<u>200</u>	<u>10</u>
나. 객실 21실 이상 50실 미만의 숙박업소 또는 영업장 총 면적 300평방미터 이하의 목욕장인 경우	<u>50</u>	<u>100</u>	<u>200</u>	<u>10</u>	----- ----- -----	<u>30</u>	<u>50</u>	<u>100</u>	<u>5</u>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다. 객실 20실 이하의 숙박업소인 경우	30	50	100	7	-----	10	30	50	3
3.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도매센터·시장 및 기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 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300	300	300	30	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를 -----	100	200	300	15
4. 영 제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서 백화점·대형점·쇼핑센터를 경영하는 사업자가 재활용제품의 교환·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때	300	300	300	30	----- 대규모점포 중 백화점·전문점·할인점·쇼핑센터를 -----	100	200	300	15
5.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자(3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제외한다)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환불 등에 대한 미고지 등을 포함함)하거나 또는 합성수지재질로 도포되거나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100	200	300	20	-----	30	50	100	5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액	과태료				포상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u>50</u>	<u>100</u>	<u>200</u>	<u>10</u>	-----	<u>10</u>	<u>30</u>	<u>50</u>	<u>3</u>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u>30</u>	<u>50</u>	<u>100</u>	<u>7</u>	-----	<u>5</u>	<u>10</u>	<u>30</u>	<u>2</u>
6.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1회용품을 사용한 때					-----				
가. 매장면적이 333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u>100</u>	<u>200</u>	<u>300</u>	<u>20</u>	-----	<u>50</u>	<u>100</u>	<u>200</u>	<u>10</u>
나.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 3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u>50</u>	<u>100</u>	<u>200</u>	<u>10</u>	-----	<u>30</u>	<u>50</u>	<u>100</u>	<u>5</u>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u>30</u>	<u>50</u>	<u>100</u>	<u>7</u>	-----	<u>10</u>	<u>30</u>	<u>50</u>	<u>3</u>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u>10</u>	<u>30</u>	<u>50</u>	<u>3</u>	-----	<u>5</u>	<u>10</u>	<u>30</u>	<u>2</u>

현행					개정안				
과태료				포상 금액	과태료				포상 금액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부과대상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후)	
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증권 및 선물중개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광고대행업, 교육서비스업중 기타 교육기관, 영화산업, 공연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합성수지재질로 도포 또는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을 제작·배포한 때					-----				
가. 매장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인 사업자	<u>100</u>	<u>200</u>	<u>300</u>	<u>20</u>	-----	<u>50</u>	<u>100</u>	<u>200</u>	<u>10</u>
나.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50</u>	<u>100</u>	<u>200</u>	<u>10</u>	-----	<u>30</u>	<u>50</u>	<u>100</u>	<u>5</u>
다.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 165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30</u>	<u>50</u>	<u>100</u>	<u>7</u>	-----	<u>10</u>	<u>30</u>	<u>50</u>	<u>3</u>
라. 매장면적이 33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자	<u>10</u>	<u>30</u>	<u>50</u>	<u>3</u>	-----	<u>5</u>	<u>10</u>	<u>30</u>	<u>2</u>
8. 운동장, 체육관, 종합체육시설에서 체육, 공연 등의 행사를 개최하는 자가 1회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한 때	<u>100</u>	<u>200</u>	<u>300</u>	<u>20</u>	-----	<u>50</u>	<u>100</u>	<u>200</u>	<u>10</u>